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개정 '20. 12. 29. 시행 '21. 1. 1.)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 삭제 (안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률인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어 현행 조례상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의 대상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세법」 제74조 등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었는 바,
- 주민세 5개 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과세 근거를 명확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조례안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중 성실납부자 대상에 ‘주민세 재산분’ 규정이 있는 바, 이를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지 않고 삭제하려는 것은 성실납부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경과 조치)에서는 기존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경우 성실납부자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실납부자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07 호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개정 '20. 12. 29., 시행 '21. 1. 1.)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 삭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10. 14. ~ 11. 3.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자동차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 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 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 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 에 대한 <u>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 산분에</u>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 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 ----- ----- ----- ----- ----- ----- <u>자동차세</u> ----- ----- ----- ----- -----.